

공통 기본 방역수칙(모든 시설 적용)

- 방역수칙 게시·안내
-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
- 실내 마스크 착용
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-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- 일 1회 이상 소독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(기준 5종, 신규 11종(12.6.~)) >

시설명	방역수칙
▲ 유흥시설(5종) ▲ 콜라텍·무도장	· (운영시간) 24시까지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 ·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
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 ▲ 경륜·경정·경마장 ▲ 카지노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리듬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
▲ 식당·카페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)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PC방 ▲ 도서관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 또는 별도 성취 공간(도서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), 좌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▲ 실내스포츠경기(관람)장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
▲ 학원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멀티방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파티룸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(파티룸) 취식 가능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>

시설명	방역수칙
▲ 오락실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▲ 놀이공원·워터파크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▲ 실외체육시설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▲ 전시·화·박람회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종전 수칙(6㎡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(국제회의)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▲ 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▲ 종교시설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※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·로만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

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*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

1 공통사항

Q1. ‘사적모임 제한’은 무엇을 말하나요?

-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되는 **일시적인 집합, 모임 활동을 제한**하는 것을 의미함
- * (사적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직장 회식(종식 포함), 온라인 카페 모임, 가족·친구 등 친목 모임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
-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·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

Q2.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접종자·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,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

- 3 -

Q3. ‘사적모임 제한’의 예외사항이 있나요?

-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
-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-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
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
-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
-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‘스포츠 경기 진행’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

Q4.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?

- 돌봄인력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)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,
- 단,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(지자체 재량)
-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

Q5.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- 감염병예방법령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4항)에 따라,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-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,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,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

- 4 -

Q6.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?

-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
 - 다만,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, **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**하고, **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**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
-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**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**

Q7.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,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,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?

- 택시, 버스, 지하철(철도)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**교통수단**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

2 가족 모임 관련

Q8.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?

-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,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

- 5 -

Q9.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?

-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**가족 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**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,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

Q10.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?

- 돌잔치는 '행사'에 해당하며, **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(99명)까지 모임이 가능**
 - 돌잔치 참석자 모두 **접종완료자 등***으로 구성하는 경우, **최대 500명 미만(499명)**으로 운영할 수 있음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 - ※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·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(14-Q1 참조)

- 6 -

3 직장 관련

Q11.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,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?

-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,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
 - 다만 면접,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

Q12.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?

-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,
 - 회의 전·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

Q13.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?

- 업무(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)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,
 - 모임·회의 등의 전·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
- 도시락·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,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(침방울)이 많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

- 7 -

Q14.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?

-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,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

4 다중이용시설 관련

Q15. '운영시간 제한'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?

-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,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

Q16.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?

-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손님과의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포함되지 않음
 - * 골프장의 경기보조원(캐디), 식당 종사자, 낚시배 선장·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,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

Q17.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,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?

- '사적모임 제한'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·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
- 따라서,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

- 8 -

Q18.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?

-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**사적모임 제한 없이** 식사가 가능하나,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

Q19.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?

-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,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

Q20. 식당·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?

-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**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**까지 가능하나,
 - 식당·카페는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가 적용**되므로 **접종완료자 등*만** 모임이 가능함(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)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
Q21.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?

- 통상 **일반음식점**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, **홀덤펍**은 ‘**식당·카페**’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, **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펍게임장**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

- 9 -

Q22.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?

-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**일정 숫자 이상**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(축구, 야구, 풋살 등), **실외 스포츠 경기장**(스포츠 영업시설, 국공립 스포츠시설, 학교 운동장 등)에서 ‘**스포츠 경기 진행**’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**사적모임 제한 인원**(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) **이상 모임**이 가능
 - 이 경우 **접종 완료자 등*으로만** 추가하여 **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**^{**) (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)}을 **초과하지 않는 범위** 내에서 이용(운영) 가능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 - ** 예)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, 총 18명이므로,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.5배인 27명임
 -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(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)을 초과한 인원(수도권 21명, 비수도권 19명)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
 -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,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
-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,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필요

Q23.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?

- 골프장의 경우 **사적모임 제한 범위**(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) **내에서** 이용 가능함
 - **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**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**접종완료자 등*만 이용이 가능함***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
Q24.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?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(필수 경영활동)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,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
-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,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, 접종 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,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(문체부)·지자체 승인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

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원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
Q25.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?

-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(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)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
-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,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

- 11 -

5 기타

Q26.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(친인척 등),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?

-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
- 다만,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

Q27.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?

-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,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

Q28. 주택조합원 모임, 아파트 입주인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?

-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

Q29. 자원봉사활동도 '사적모임'에 해당하나요?

-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
-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

Q30. 중증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?

- 12 -

- 사적모임이 아닌 **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**
- 단, 회원 간 소모임·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

Q31.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?

- 마을회관은 **장소적 개념**으로,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**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**

Q32.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?

-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**영업활동**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

Q33.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?

-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**영업활동**을 하는 종사자는 **제한 인원**에 포함되지 않음

Q34.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?

-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**사적모임**의 성격으로서 **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**하며,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**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**함
- 단, 그 외 **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**의 경우 **인원 제한 없음**

Q35.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?

-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 까지 가능함

- 13 -

2 '다중이용시설' 관련 Q&A

1 방역수칙·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

Q1.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?

-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
-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

Q2.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?

-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**사적모임 제한 범위 (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) 내에서 이용 가능**함

2 식당·카페

Q1.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?

- 식당·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**접종완료자 등*만 이용 가능(126~)**
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 가능하며,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

- 14 -

-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, 식사 전·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**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**,
 - 포장·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**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**을 작성해야 함
-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Q2. 식당·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?

- 일행의 경우에는 **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**
 -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**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**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

Q3 백화점·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?

- 백화점·대형마트·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**출입자 명부 작성***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**하여야 함

* 백화점·대형마트 등 (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)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

- 15 -

3 결혼식장

Q1.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결혼식은 **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㎡당 1명**으로 운영하되, **참석 가능 인원**은 다음의 수칙에서 **택일**하여 적용함(혼합 적용 불가)

❶ **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**

❷ **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**

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원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
※ 1차 개편 시기 동안 **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으로도 택일**하여 운영 가능함

Q2.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?

-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·신부,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,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**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**

- 16 -

4 노래연습장

Q1.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?

- ※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(예:유비방)은 노래(코인)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
-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**면적당 인원제한, 운영시간 제한**이 해제되며, 동시에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**가 의무 적용됨
 - (입장 시) 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(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), 만 18세 이하인 자, 확진 후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(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, 의사 소견서 필요)만 이용 가능
 - (이용 시)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·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
 - (출입자 명부)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·관리는 계속 유지됨
 -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*는 계속 유지됨
 - *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
 -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만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Q2.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?

-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

- 17 -

Q3.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?

- 사적모임 제한 범위(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) 내에서 가능한

5 실내체육시설

Q1.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?

- 실내체육시설은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**가 적용되므로 **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(48시간 이내 발급), 18세 이하인 자, 확진 후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(의학적 사유에 한정, 의사소견서 필요)**에 의한 **접종불가자**의 경우 이용 가능함
 - ※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

Q2.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?

-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**유사업종**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

Q3.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?

-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**운영시간 및 인원 제한 규정**은 해제되었음

- 18 -

- 단, **실내 취식**(물·무알콜 음료 외) **금지** 및 **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·관리**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**의무적용** 사항임
-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Q4.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?
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**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**이며,
-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**트레이너**는 해당 시설의 **운영**을 위한 **인력**으로서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**

Q5.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(주관)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?

- 동호회 모임은 **사적모임 제한 범위** 내에서 가능함
- **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**(48시간 이내 발급), **18세 이하인 자, 확진 후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**(의학적 사유에 한정, 의사소견서 필요)에 의한 **접종불가자**의 경우 이용 가능함

- 19 -

6 영화관·공연장 등

Q1.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?

- **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가 적용되며, 접종완료자 등*만 이용할 수 있음**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
- **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**까지는 **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**하고,
- **100~499명**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**참석 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***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**500명 이상**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, **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,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**함
 - * ▲침방울이 튀는 행위(합성, 기립, 합창 등) 금지 ▲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
▲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

Q2.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?

- **자동차극장**의 경우 **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**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**특수한 형태**에 해당되므로, **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**

- 20 -

Q3. 11.1.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?

- **실내 취식 금지**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**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**됨
 - * 11.1.부터 접종 완료자 등(접종 완료자,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확진 후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)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(영화 상영관)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금지
- 공연장 역시 **취식이 금지되는 시설**임

Q4. 영화 시사회(배우 무대인사 포함)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?

- **해당되지 않음**
 - **영화 시사회**는 **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**로서 **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***을 준수하면 가능함
 - *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

Q5.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?

- 민간시설과의 **형평성** 및 **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**를 고려하여, 민간 공연장과 **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**을 적용할 수 있으나, **방역상황** 등을 고려, **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**도 가능함

- 21 -

7 PC방, 오락실·멀티방 등

Q1.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, 오락실·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?

- 2021. 11. 1.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·멀티방의 **운영시간 제한은 해제**됨

Q2.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?

- PC방과 멀티방은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**가 적용되며, **접종완료자 등*만** 이용할 수 있음(오락실 제외)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제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(오락실은 시설·신고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)

Q3. PC방, 오락실·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?

- **음식 섭취 금지**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**해제를 검토**할 예정임
 - 단, **물·무알콜 음료는 음용** 가능하고,
 - PC방의 경우, **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** 가능함

Q4.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, 오락실·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?

- 22 -

-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, ②출입자 명부작성(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), ③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(PC방, 멀티방은 의무도입), ④마스크 착용, ⑤음식 섭취 금지, ⑥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등이 있음

Q5.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?

-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

8 스포츠 경기(관람)장 등

Q1. 실외 스포츠 경기(관람)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?

- **접종,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%까지** 입장 가능하고 **일행 간 한 칸 띄우기** 적용
 - **접종 완료자 등*만**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(전용구역)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%까지 입장 가능 (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)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 - 입장한 동행자(일행)들의 경우 **사적모임 제한 인원**(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)을 준수하여야 함

Q2. 실내 스포츠 경기(관람)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?

- 실내 스포츠 경기(관람)장은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**가 적용

- 23 -

되며, **접종완료자 등*만** 이용할 수 있음

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수용인원의 50%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입장한 동행자(일행)들의 경우 **사적모임 제한 인원**(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)을 준수하여야 함

Q3.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?

-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**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**(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)
 - 다만, 실외 스포츠 경기(관람)장의 경우,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

Q4. 경마·경륜·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경마·경륜·경정장은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**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**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**(48시간 이내 발급)의 경우 이용 가능함

Q5. 경마·경륜·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?

-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
 - 단,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

- 24 -

Q6. 경마·경륜·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?

- 관람석 내에서는 물·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,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

Q7. 실외체육시설, 스포츠(관람)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?

-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**올바른 방법**으로 **상시 마스크**를 착용하여야 함
 -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**마스크**를 **지속 착용**해야 하며, **스포츠 경기장**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**마스크**를 **착용**해야 함

9 학원 등

Q1.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?

- **학원**은 **11.22.부터 수도권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**되었음
-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**가 적용되며, **접종완료자 등*만** 이용할 수 있음
 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 -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

- 25 -

Q2. 기숙학원,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?

- **학원·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**은 **현행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**됨
 - 다만, 입소자의 **선제적 진단검사 실시** 등 아래와 같은 **방역수칙**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**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**될 수 있음

▶ 숙박시설 운영 금지

- * **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**

<학원은 아래수칙 적용>

- ① 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
 - (입소前) 10일간 예방격리 권고(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자 예외)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사위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
 -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-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
 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
 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: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(접종완료자 예외)
- ③ 방문자 :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

<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>

- ① 입소자 (공통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
 - (입소前) 10일간 예방격리 권고(접종완료자,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)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사위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
 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-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
- ③ 방문자 :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

- 26 -

Q3.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?

- 시민단체, 법인, 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**전일제 수업**의 형태 또는 **기숙형**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**학원 방역수칙**을 적용함
- 또한, **기숙형 시설**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**숙박시설 운영**을 위해 **의무화된 방역수칙**도 준수하여야 함
- * 다만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

Q4.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?

- 독서실은 **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**
-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**가 적용되며, **접종완료자 등*만** 이용할 수 있음
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

- 27 -

10 목욕장업

Q1.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?

- 목욕장은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**가 의무 적용되며, **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**

Q2.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?

-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**가능하지 않음**

11 국제회의·학술행사

Q1. 국제회의·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?

-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**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**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
- ❶ **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**
- ❷ **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**
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*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(직원)은 인원 산정 시 제외
- ※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)도 택일 적용 가능
-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**좌석 간 한 칸 띄우기** 적용

- 28 -

Q2. 국제회의·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?

- **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**, 식사가 가능함
- 이 경우에도 **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**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·카페 방역수칙*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
- * 기존 식당·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(14-Q1 참조)

12 전시회·박람회

Q1. 전시회·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전시회·박람회의 경우, **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**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
- ① **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**
- ② **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**
-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- ※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(6㎡ 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

- 29 -

13 종교시설

Q1.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?

- **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**

Q2.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?

- **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(최소1m)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**을 준수하여야 하며,
- **실내 취식*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(예, 통성기도 등)**는 금지됨
- * 매주(정기적으로) 종교시설에서 **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,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**
- ** 종교시설의 책임자·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

Q3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(미사·법회·예배·시일식 등)은 무엇이며,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?

- 미사·법회·예배·시일식 등 **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**를 말함
- * 예배(주일 예배, 수요 예배, 새벽 예배 등), 미사(주일미사, 새벽미사 등), 법회(초하루법회 등), 예회(아침좌선, 월초기도 등), 시일식 등 종교활동
- 정규 종교활동 시, **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 방역수칙**을 준수하여

- 30 -

- ① **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, 수용인원*의 50%까지,**
 * (수용인원) ▲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㎡ 당 1인으로 산정
- 또는, ② **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운영(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**)** 시, 인원 **에 제한 없이** 정규 종교활동 가능
 *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 **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, 식순담당, 영상·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
 ※ 동일 종교시설 내 **정규 종교활동 공간(예배당, 소성당, 법당 등)이 여러 개인 경우,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(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) 선택,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**

**Q4. 정규 종교활동 시,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?
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?**

-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
- 성가대·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
 - 다만, **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, 성가대·찬양팀 운영이 가능***
 *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, (물·무알콜 음료외)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

Q5.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?

- 미사·예배·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, 성경/경전공부, 구역예배,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

- 31 -

- **접종완료자로만** 구성하여 수도원 6명, 비수도원 8명까지(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) **종교시설 내에서만** 가능
 * 취식 금지, 큰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등의 행위(예, 통성기도)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

Q6. 종교시설 주관으로 '종교행사'가 가능한가요?

-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(99명까지) 허용되며,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(499명까지) 운영 가능*
 * (499명) 종교인,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,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
 ※ 종교행사 시,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·행사 기준이 적용되며,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

Q7. 수련원, 기도원,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?

- 기도원 수련원,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

Q8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(강사)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?

-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.
 - 단,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“**방송출연**”에 해당하여 설교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에 한해 **마스크 착용 예외상황**으로 인정함

- 32 -

-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(유튜브 등)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, “방송출연” 적용은 곤란함
- 단, 사적 공간(별도의 분리된 공간)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
- ※ ‘마스크 착용’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(질병관리청)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Q9.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(연합단체) 주관의 기관운명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?

- 종교시설의 재정(회계),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,
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소독, 음식섭취 금지,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,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·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

Q10.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(장소)을 빌려서 행사(결혼식, 장례식 등)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?

-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,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, 결혼식은 ‘결혼식장’, 장례식은 ‘장례식장’, 공연은 ‘공연장’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교육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
- *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‘식당’ 방역수칙 적용

Q11.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?

-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, 돌봄 등

- 33 -

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,

- ※ 다만, 시민단체·법인·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
-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(Q4 참고)* 내에서 운영 가능
- * 취식 금지, 큰소리로 함께 기도·임송하는 등의 행위(예, 통성기도)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,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

Q12.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?

-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, 종교시설 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
- *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, 노래·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
-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·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
- 다만, 아동·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,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(수강료, 이용료 등 납부)로 운영되는 보육활동·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
- ※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/대안학교(학원수칙 적용), 교리·목회자 양성,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,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

14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

Q1. 결혼식,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?

-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

*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,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
좌석 한 칸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

3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관련 Q6A

[1] 개요

Q1.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?

-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(요양병원·시설, 의료기관 등)을 대상으로, **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**를 위해 **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**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‘**방역 패스**’의 개념입니다.

Q2.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?

- 11.1일 시행하는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**의 **적용대상 시설**은 **고위험 다중이용시설**, **감염취약시설**입니다.
- **고위험 다중이용시설**은 유흥시설*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(경마·경륜·경정, 카지노)입니다.
 - *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
- **감염취약시설**은 의료기관, 요양병원·시설, 중증장애인·치매시설, 경로당·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.
 - 감염취약시설 중 **의료기관, 요양병원·시설**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**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**되며,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.

Q3.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,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, 만 18세 이하인 사람, 불가피한 사유(건강상 이유)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,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.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>

구 분	접종완료자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		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실내체육시설	○	○	○	○
노래연습장	○	○	○	○
목욕장	○	○	○	○
입원자·입소자 면회	○	○	×	×
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	○	○	×	×

Q4.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?
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는 2021.11.1.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,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

- 37 -

[2] 발급대상 및 방법

< 2-1. 접종완료자 >

Q1.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?

- 예방접종증명서는 **접종 완료 후** 접종기관(예방접종센터, 위탁의료기관)·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<https://nip.kdca.go.kr>)에서 **언제든지 발급** 가능합니다.
- 다만,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**적용시설을 이용**하기 위해서는 **접종 완료일에서 2주(14일)가 경과**해야 됩니다.

Q2. 접종 완료 후 쿠브(COOV)에서 발급받은 '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'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?

- **네, COOV앱**(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)에서 **본인인증** 및 **접종정보 업데이트** 후 사용 가능하며,
* 전자출입명부 플랫폼: 네이커, 카카오톡, 토스, PASS앱(SKT, KT, LG)
-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, **COOV앱에서 QR코드 생성·스캔**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.

Q3.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(COOV)에서 '14일 경과'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,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?

-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(24시)부터 '14일 경과'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* (예시) '21.11.1. 10:00에 접종완료한 경우, '21.11.15일 24시부터 '14일 경과' 표시
- 표시되지 않는 경우, **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** 하거나 앱상단의 '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'를 통해 **증명서를 갱신**하면 됩니다.

- 38 -

Q4.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?

- 예방접종증명서는 **접종완료자만 발급** 가능합니다.
- **1회로 접종 완료되는 안센 백신**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서 **발급이 가능**하고,
- **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**(아스트라제네카·화이자·모더나)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**발급이 불가**합니다.

Q5.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,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- 11.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**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**, 국내 또는 해외에서 **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** 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.
-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,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

< 2-2. PCR 음성확인자 >

Q1.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?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?

- 네,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 (높은 위음성률,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)등을 고려하여 **PCR 검사만 인정**됩니다.

- 39 -

Q2. PCR 검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? 문자도 인정 되나요?

-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**PCR 음성확인 문자**, ② 보건소에서 발급한 **종이증명서로 가능**합니다.
- '21년 12월말부터는 **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**을 통해 온라인으로 '**PCR 음성확인서**' 출력·발급이 가능하며, COOV(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)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*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 확인은 '21.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

Q3.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?

-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**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**까지 유효하며,
-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**음성 결과 등록(보고)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**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.

※ 유효기간 계산 예시

- '21.11.12. 10: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, '21.11.14일 24시까지 유효
- '21.12.20. 23: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, '21.12.22일 24시까지 인정

Q4.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?

- 음성확인을 위한 PCR **검사비용은 무료**이나,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**유료로 전환**될 수 있습니다.

- 40 -

< 2-3. 의학적 예외자 >

Q5.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·음성확인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?

- 확진 후 격리해제자,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*으로 인한 접종 금지·연기 대상자, 면역결핍자, 항암제·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,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.

* 아나필락시스 반응, 혈소판감소성혈전증, 모세혈관누출증, 심근염·심낭염, 길랑바레증후군 등

Q6. 의학적,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·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?

- 접종증명·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정되며,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, 경미한 부작용(발열, 통증 등)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7.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?

-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'격리 해제 확인서'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-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,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'격리해제서' 출력·발급이 가능합니다.

* 다만,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

- 41 -

Q8.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「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」에서 발급한 '임상시험 참여증명서'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Q9.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?

-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接种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(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.
-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·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,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'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Q10.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·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,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?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(아나필락시스 등)의 경우,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(네이버, 카카오, 토스, PASS앱(SKT, KT, LG))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,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- 기타 건강상의 이유(면역결핍, 항암제·면역치료제 투여)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,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·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'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42 -

·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' 발급이 가능하며,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.

-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, '21.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'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' 발급이 가능합니다.

Q11.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?

-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,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,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- 다만, 진단서 내용(병·의원, 진료의사, 진단명 및 사유)을 확인 후, 보건소에서 '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'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.

[4]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

Q1.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?

-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,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·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
- ① **예방접종완료자**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(네이버, 카카오, 토스 등) 등의 전자 증명서, 예방접종증명서(종이)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
- ② **PCR 음성확인자**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,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(종이),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(네이버, 카카오, 토스 등)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
- ③ **예방접종·음성확인 예외자**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,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,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·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
- 다만,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,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

구 분	접종완료자 (격리해제 포함)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		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실내체육시설	○	○	○	○
노래연습장	○	○	○	○
목욕장	○	○	○	○
입원자·입소자 면회	○	○	×	×
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	○	○	×	×

Q2.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?
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,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·음성확인자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,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Q3.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?

-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), 기간만료 전 여권,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- *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신분증
-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(유효기간 내), 청소년증,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(청소년증 발급확인서), 기간만료 전 여권,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(학교장 확인 필요), 학생증, 재학증명서,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.

- 45 -

Q4. 접종증명·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?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?

- 접종증명·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·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. 다만,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·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,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.
-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·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, 위·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,
 - 증명서 등을 위·변조한 사람과 위·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- * (예시)
 - (증명서 등 위조) :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
 - (증명서 등 변조) :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
 - (위·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) : 타인 또는 본인이 위·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
- 또한,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 - * (예시)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

- 46 -

Q5.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·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?

-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·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·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, **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** 있습니다.
- 만약 **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** 입장을 하는 경우 **관할 시·군·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** 있습니다.

Q6. 접종증명·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?
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·운영자가 **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**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**방역수칙을 위반**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**관리·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**이 될 수 있습니다.

*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

**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(관리자·운영자에 대한 과태료), 제83조제4항(이용자에 대한 과태료), 시행령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, 시행규칙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

- (과태료) : (이용자)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
(관리·운영자) 1차 위반시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
- (행정처분) : (1차위반) 운영중단 10일 → (2차) 20일 → (3차) 3개월 → (4차) **폐쇄명령**

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

1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관리

Q1.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

- ‘위드 코로나’라는 표현은 **일상 회복의 방향성**을 보여줄 수 있으나, **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**
 - 또한,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,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
-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·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

Q2. ‘단계적 일상회복’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?

-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‘일상’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
-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,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
 - 직장, 지역사회,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,
 -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계층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

Q3. '단계적 일상회복'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

- '단계적 일상회복'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**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**되어야 함
 -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%를 예상보다 **빠르게 달성**(‘21.10.23일)
-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**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**되었고 **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**을 고려하여 11.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

Q4.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?

- 해외, 특히 **사회 봉쇄**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**1차 개편** 시 일반적으로 **봉쇄를 해제하는 방안**들을 우선 추진
 -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,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
 - 따라서 **해외와 절대적인 비교**를 하는 것은 **적절하지 않으며**,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

Q5.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?

- **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**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동시에 **경제·민생, 사회·문화, 자치·안전**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**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·발굴**하고
 - 경제·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'**포용적 회복연구단**'과 함께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**소사회적인 변화와 개선**을 추진할 예정

- 49 -

Q6.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

- **단계적 일상회복 이행**을 위해 **방역 대응방식**을 기존의 '**확진자 수 억제**'에서 '**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**'로 전환하고자 함
 -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, **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**을 통해 결정할 필요
-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**발생지표와 병상지표, 집중지표를 관리**하고 모니터링할 계획
 - **발생지표**는 사망자 수, 위중증 환자 수, 입원환자 수, 확진자 수를 통해 **발생 규모와 상황**을 모니터링하고,
 - **병상지표**는 **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**을 지표로 하여 **의료 대응 여력**을 확인하고,
 - **집중지표**는 **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**를 지표로 하여, **접종과 그에 따른 면역력** 등을 확인할 계획임
- 확진자 규모는 추후 **중환자 수를 예측**할 수 있는 **선행지표**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

2 의료대응체계

Q1. 현재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?

- 10월 29일 기준, **중증병상**은 총 1,065병상 중 460병상 사용하고 있어, **병상가동률 43.2%**임
 - **중등중증병상**은 총 9,956병상 중 4,491병상 사용하고 있어, **병상가동률 45.1%**임
-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**확진자** 日 5천명 발생하여도 **대응 가능한 수준**임

Q2.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?

- 현재 운영 중인 **거점전담병원**과 유사한 형태,
중등중~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,
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* 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
 - * 분만·수술·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
- 중환자 전담치료병상, 거점전담병원 **운영 경험**을 토대로, **시설·인력·장비 기준 정할 예정**으로,
- **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,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** 등을 **종합적**으로 고려, **지정 기준·규모** 등을 11월에 **확정 및 지정**할 계획

- 51 -

3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

Q1.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?

-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,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, 돌파감염 발생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·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,
 -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,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

Q2.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?

- 예방접종전문위원회(8.25일)는 **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시행** 권고
 - 이를 토대로 **4분기 시행계획**(9.27일)에서 고위험군* 대상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
 - * 코로나19 치료병원, 요양병원·요양시설 입원·입소자, 60세 이상 고령층 등 단, 면역저하자^{10.28일}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
 - ^{10.28일}11-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**얀센백신** 접종자, 50대 이상, 우선접종 대상군,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 발표
-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**주요 연구결과, 해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** 중에 있으며, **결정 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**에 안내 예정
 - * (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) 미국 65세 이상, 영국 50세 이상, 프랑스 65세 이상, 독일 80세 이상, 이스라엘 12세 이상

- 52 -

Q3. 최근 요양병원,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,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?

-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(8.25일) 권고에 따라 **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**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
 - * 단, 면역저하자 및 안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
- 다만 집단감염 우려·국외 출국·입원·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**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**
 - * ①감염취약시설·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는 경우,
 - ②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,
 - ③입원·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6~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
- 요양병원, 시설은 감염취약시설·다중이용시설로 **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전 실시 가능**

Q4.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

- 국내·외 이상반응 발생현황, 동향에 대해 **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**
 -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,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진단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, **조기 인지 및 치료**가 되도록 노력하겠음
 - 또한,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, 관련 부처와 함께 **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면밀히 검토**하겠음
- 아울러, 새로운 이상 반응이 통계학적 연관성,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**인과성 판정 기준에 신속히 반영**하겠음

- 53 -

4 방역대응 관련

Q1.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개편에서 우선순위 중 감염 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?

-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요양병원, 주간보호센터, 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시설, 장애인시설, 교정시설, 군부대, 기숙사이며,
- 고위험시설은 감염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, 주점, 노래방, 실내체육시설, 학원, PC방, 목욕탕, 종교시설이 해당됨

Q2.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, 단축하는 4일에 대한 전파위험성은?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?

- 질병청과 미국 CDC* 조사 결과에 따르면 8~9일차 검사,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.3%~0.9% 이하로 확인되고 있음
 - ※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격리 또는 ②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 가능 명시
-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 '9일차 검사-10일차 확인-11일차 정오 해제'를 뜻함
-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,
 - 소급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자 격리를 관리·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임

- 54 -

Q3. 대규모 유행 발생 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?

- 대규모(5천명~1만명) 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·분류·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
 - 따라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(인적사항, 접촉력 등)을 입력하여 접촉자 조사·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,
 - 보건소 담당자(역학조사관)의 확인(필요시 추가조사)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
-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·방해·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·은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,
 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*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임
 - 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79조)에 처해질 수 있음

Q4.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공유 앱 활용 및 개인 정보보호 방안은?

- 앱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개인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함
-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,
 -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,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유출 방지
- 또한, 전자출입명부(QR코드)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중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계획임

- 55 -

5 치료제 관련

Q1.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

-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'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
 - 다만,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, 치료제 허가·승인(美FDA, 韓식약처 등),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- 아울러,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·가격은 비밀유지협약(CDA)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,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

Q2.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?

- 국내·외 치료제 개발현황을 모니터링(8종)하고 있으며,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,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

Q3.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?

-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,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**코로나19 경중·중등증 환자**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,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

- 56 -

붙임 4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

Q1.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되나요?

-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, 체온계,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**재택치료키트**가 집으로 배송됩니다.
-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**자가검사 키트, 4종보호구 세트**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‘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’에 따라 **입원, 시설치료**자와 동일하게 **유급휴가 제공** 또는 **생활지원비**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**재택치료** 기간동안 **지자체**별로 **자가격리**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**식료품, 생필품**도 지원됩니다.

<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(10일 기준) >

구분	가구원 1명	가구원 2명	가구원 3명	가구원 4명	가구원 5명 이상
현행 (입원·입소·재택치료자)	339,000	572,850	739,280	904,920	1,069,070

(단위: 원)

*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에 사업주 신청 가능,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안됨

- **매일 협력의료기관**을 통한 **2회***의 **건강모니터링**이 진행되며, **비대면 진료**를 통한 **약처방**과 필요 시 **단기·외래진료센터****에서의 **대면 진료**도 지원합니다.

*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실시

** **홍부X선 촬영, 혈액검사,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** 등 필요한 진료실시

- 57 -

Q2. 고령자,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?

- **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**,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, 소아·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**입원(입소) 치료**를 실시합니다.
-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**60세 이상, 기저질환자, 50세 이상 미접종자** 등은 **집중관리군**으로 **1일 3회 모니터링** 실시 중입니다.
-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**단기·외래진료 체계도 마련**하고 있습니다.

◆ 대상자의 입원요인 (변경없음)

-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
- 호흡곤란(일상생활 중에도 숨참)
-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
-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
-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
-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, 천식, 심부전, 관상동맥질환
-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
-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
- 와상환자(낮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)
- 고도비만(BMI>30)
- 증상(복통, 진통, 질출혈 등)을 동반한 임신부
-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*

* 호흡곤란, 청색증, 흉곽함몰, 뚜렷한 음식섭취(수유) 불량 및 탈수, 진단된 만성폐질환/심장질환/대사성질환/면역이상, 면역억제제 투여,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

- 58 -

Q3. 단기·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?

-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**적절한 검사와 치료**를 받을 수 있도록 **단기·외래진료센터를 지정·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** 계획입니다.
- 단기·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**흉부 X선 촬영, 혈액검사,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·투여**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.
- * 단기진료센터: 1-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, 치료서비스 제공
- * 외래진료센터: 동선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, 치료서비스 제공
-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**증상이 완화** 되더라도 대부분 **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**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.
- 앞으로는 단기·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**필요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**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**의료대응 체계**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.

- 59 -

Q4.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·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**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**하고,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하였습니다.
- 증상변화로 인해 **단기·외래진료체계에서** 진료를 받거나, **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** 후 보건소의 구급차,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.
- **응급 상황** 발생한 경우에는 **119에서 지체없이 출동**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- *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,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, 지자체별·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
-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, **소방청,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**하고 **지속 확충**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**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**하고,
- **시·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,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**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60 -

Q5.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감염위험은 없나요?

-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.

* 참고로, 기숙사, 고시원,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.

- 재택치료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*을 준수하고,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끔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

< 기본환기수칙 >

- ▶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,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
- ▶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(내부순환보드 지양)
- ▶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
- ▶ 번기 사용 시 번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

Q6.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?

-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,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.
-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※ (생활수칙 주요내용) 생활공간 분리,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,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,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

-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,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Q7.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?

-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, **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**가 필요합니다.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**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**입니다.
 -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**예방접종완료자**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(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) PCR 검사 후 **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**됩니다.
 -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**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**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**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(10일간)**가 필요합니다.
 - 다만, **병원 진료,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**됩니다.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, 자가 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
- 또한, **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**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**생활치료센터 입소가** 가능합니다.